

# 해외건설협회와 한국도로공사간 업무협력 약정

해외건설협회와 한국도로공사는 건설업계의 해외시장 진출과 국내 도로분야 기술의 해외전파 지원을 위한 양 기관의 상호협력이 우리나라 해외건설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,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.

## 제1조 (목적)

본 약정은 해외건설협회와 한국도로공사가 해외사업을 지원 및 추진함에 있어 상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업무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협력내용 및 범위)

해외건설협회와 한국도로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업무 분야에서 상호 긴밀하게 협력한다.

- 가. 해외 도로의 건설, 유지관리 및 CM 등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
- 나. 해외 각국에 대한 도로분야의 전문가 파견사업, 개발 및 타당성조사사업, 신시장 개척 지원 사업, 민관 합동 수주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
- 다. 양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 및 지원
- 라. 해외 도로사업 관련 양 기관 발행 정기 간행물, 발간자료, 각종 영상 및 교육자료, 연구사업 정보의 교환
- 마. 해외 도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
- 바. 필요시 국내외 제3의 기관에 양 기관 우선 추천 노력

### 제3조 (업무 협의 및 신의성실)

양 기관은 추가로 합의사항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만나 협의하며 본 약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.

### 제4조 (경비 부담)

제반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내외에서 소요되는 직접 및 간접 비용의 부담 등은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한다.

### 제5조 (발효, 유효기간 및 종료)

이 약정은 2007년 9월 3일부터 발효하여 계속 유효하며, 각 당사자는 3개월 전에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.

2007년 9월 3일 한국도로공사에서 동등한 효력을 가진 원본 각 2부에 서명하였다.

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20-23

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30

해 외 건 설 협 회  
회 장 이 용 구

한 국 도 로 공 사  
사 장 권 도 업

이 용 구

권 도 업